

# 중진교수 특별연금 지급지침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중진교수 특별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진교수”라 함은 현직의 직위 및 학문적 위치로 보아 분야별 석학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진교수로 임용한 교수를 말한다.
2. “특별연금”이라 함은 퇴직한 중진교수에게 본 대학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3. (삭제 2000.3.1부)
4. “보수월액”이라 함은 특별연금 지급기준금액으로, 전년도 보수월액에서 본대학 전체교원 보수 평균 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한다. (개정 2000.3.1부)
5. “유족”이라 함은 본인의 퇴직당시 배우자를 말한다.
6. “사학연금수혜액”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급여 중 “퇴직급여(또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말한다.

**제 3조 (지급대상)** ① 특별연금은 현직의 직위 및 학문적 위치로 보아 분야별 석학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용된 본 대학 중진교수에게 지급한다. 단, 제 4차 대학설립심의회(’86.2.8) 및 제 58차 교원인사위원회(’89.11.13)에서 중진 교수로 기임용된 중진교수 12명은 이 지침에 의해 지급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중진교수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 4조 (정년)** 중진교수의 정년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70세로 한다.

**제 5조 (특별연금 지급액)** ① 10년이상 본 대학에 근무하고 만 65세 이후 퇴직한 중진교수에게는 보수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존기간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상당액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특별연금 지급대상 교수가 사망시는 다음 각호의 1의 지급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1. 재직중 사망시는 제 1항 보수월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의 생존기간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특별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던 교수가 사망시는 제 1항 보수월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의 생존기간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③ 중진교수로 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대학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특별연금지급액 X 재직월수/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재직월수 계산에 있어 월 미만은 버린다.

1. 정년까지 근무하였으나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일 경우
2. 사망으로 당연퇴직한 경우
3. 신병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서의 특별연금 지급액은 사학연금수혜액을 차감후 지급한다.
- ⑤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적용에 있어 해당교수가 파면되거나, 정년이 되기 전에 법인의 승인없이 타기관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특별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조 (지급방법)** ① 특별연금은 제 5조의 특별연금지급액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사학연금수혜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그 전액을 본 대학에 귀속시킬 경우에는 특별연금 지급액 전액을 퇴직한 익월부터 생존기간 동안 연금으로 매월 지급한다.
  2. 사학연금수혜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후 본 대학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연금을 연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특별연금액과 사학연금수혜액을 연금으로 환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한 익월부터 생존기간 동안 연금으로 매월 지급한다.
  3. 사학연금수혜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후 본 대학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연금을 일시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특별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사학연금수혜액과의 차액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 사학연금수혜액중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후 사학연금수혜액을 본 대학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연금을 연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특별연금액과 사학연금수혜액중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환산한 금액 + 퇴직급여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퇴직한 익월부터 생존기간 동안 연금으로 매월 지급한다.
  5. 사학연금수혜액중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후 사학연금수혜액을 본 대학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연금을 일시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특별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사학연금수혜액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 퇴직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② 제 1항의 적용에 있어 사학연금수혜액의 일시금, 연금간의 상호 환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 조항에서의 보수월액 및 재직월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시금의 연금 환산

- 퇴직급여 :  $(\text{보수월액} \times 1/2) +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월수} - 240) \times 1/12 \times 2/100\}$
- 퇴직수당 :  $(\text{퇴직수당} / \text{퇴직급여}) \times \text{퇴직급여의 연금환산액}$

2. 연금의 일시금 환산

- 퇴직급여 :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월수}/12 \times 1.5) +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월수}/12 \times (\text{재직월수} - 60)/12 \times 1/100\}$
- 퇴직수당 :  $(\text{퇴직수당} / \text{퇴직급여}) \times \text{퇴직급여의 일시금 환산액}$

③ 제 1항의 적용에 있어 특별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일시금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보수월액은 본 대학의 기준을 적용하며 재직기간은 27년 6월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특별연금의 일시금 환산 :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월수}/12 \times 1.5) +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월수}/12 \times (\text{재직월수} - 60)/12 \times 1/100\}$

- ④ 제 1항의 제 1호, 2호, 4호에 따라 연금형태로 특별연금을 수령하던 교수가 사망시에는 사망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별연금 지급일까지는 본인연금 해당액을, 그 익월부터는 유족연금 해당액을 유족의 생존기간동안 유족연금으로 매월 지급한다.
- ⑤ 특별연금지급대상 교수가 재직 중 사망시에는 제 1항 각호의 방법중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특별연금을 연금으로 원할 경우에는 중진교수 본인이 사망한 익월부터 지급한다.
- ⑥ 제 1항 내지 제 5항에 따라 특별연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매년 인상분을 반영한 연금지급 당해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⑦ 제 1항 제 1호 및 제 5항에 따라 사학연금수혜액을 본 대학에 귀속시킨 경우 본인 및 유족의 사망으로 본 대학의 특별연금 지급의무는 종료되며, 본 대학으로 귀속된 사학연금수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 7조 (지급 신청)** ① 제 6조 제 1항에 따라 특별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진교수는 퇴직일 1개월 전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지급방법을 결정하여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6조 제 5항에 따라 특별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중진교수 본인 사망후 15일 이내로 희망하는 지급방법을 결정하여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지급일)** ① 제 6조에 따라 특별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며, 급여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제 6조에 따라 특별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사학연금수혜액 내역을 첨부하여 특별연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9조 (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1996년 9월 3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보수월액 책정의 특례) 제 2조 제 4호의 보수월액을 책정함에 있어, 1999년도 보수월액은 1999년도 본대학 교수 17호봉의 급여를 기준으로 봉급, 교재개발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의 연간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